

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
2008. 1. 29 (화) 14:00

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#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이규완 의원외 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1월 14일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월 14일

3. 제안 이유

- 「경제특별도」 건설에 따른 도민의 경제분야 관심 고조 및 도민이 경제 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경제교육 기본원칙(안 제3조)

- (1) 경제교육은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
- (2) 특정 단체 등의 이익 옹호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됨.
- (3) 지역·성별·나이 등에 구애됨이 없이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함.

나. 경제교육시책의 수립·시행(안 제4조)

- (1) 중앙계획과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경제교육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.

다. 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등(안 제5조)

- (1) 협의회는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(2) 경제교육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협의
- (3) 단체대표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,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.
- (4)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경제교육센터장이 됨.

라. 경제교육센터 지정(안 제7조)

- (1)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.

마. 실비보상 등(안 제8조)

- (1)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.

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조례는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, 경제특별도 건설에 따른 도민들의 관심과 체계적 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북도민의 올바른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다만, 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이 형식적 교육보다는 구체적인 교육대상,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평가 등 조례 시행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미비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